

의안번호	2206036
의 퇴 인	안규백의원
회 답 일	2024. 12. 30.
추 계 번호	24D5478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표준감항¹⁾인증기준의 고시, 감항인증 업무 수행,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0억 8,900만원, 2030년 75억 9,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59억 2,300만원(연평균 71억 8,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재정 소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안 제4조)	352	120	122	124	126	844	169
	감항인증 업무 (안 제5조부터 제7 조까지)	957	938	956	975	994	4,820	964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3	3	3	3	3	15	3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 (안 제11조)	8	8	8	8	8	40	8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안 제13조)	5,814	5,806	6,032	6,267	6,510	30,429	6,086
	소 계(A)	7,134	6,875	7,121	7,377	7,641	36,148	7,230
재정 수입	수수료 수입(B)	45	45	45	45	45	225	45
추가재정소요(C=A-B)		7,089	6,830	7,076	7,332	7,596	35,923	7,185

주: 본 추계는 방위사업청이 감항인증업무 등과 관련하여 2022년에 제출한 자료의 증원 인원, 1인당 보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감항은 견딜 감(堪), 배 항(航)의 합성어로 항공기, 함정 등이 안전하게 비행, 운항을 견딘다는 의미로 감항인증은 항공기, 함정 등의 개발 및 개조시 구조, 강도, 성능 등이 비행,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방위사업청장은 합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 합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감항인증 절차 등)부터 제7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까지	방위사업청장은 합정 사업이 합형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함에 대하여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형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합정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9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합정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0조(합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합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둔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합정 감항인증자문위원)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3조(합정 감항인증전문기관의 지정 등)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검사등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을 합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0	—
2	안 제5조(감항인증 절차 등)부터 제7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까지	0	—
3	안 제9조(수수료)	0	—
4	안 제10조(합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0	—
5	안 제11조(합정 감항인증 자문위원)	0	—
6	안 제13조(합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안 제4조)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채택·공포한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제합정안전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시 가입비, 연회비,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사용료 및 연례회의 참석비가 발생한다고 가정
 - 2026년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2027년 이후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비용이 각각 발생한다고 가정

- 본 추계에서는 감항인증 업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수수료 수입(안 제9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안 제11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13조)은 유사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안 제4조)

-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에 따라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국제함정안전협회 회비, 연례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표준감항인증기준 제·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항목별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국제함정안전협회 회비)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는 가입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2,400만원이 소요되고 이후부터는 연회비 1,900만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국제함정안전협회의 가입비는 500만원³⁾이고, 연회비(주요 코드 사용료 포함)는 매년 1,900만원⁴⁾으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연례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매년 1,200만원의 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연간 1회 3명의 관계자가 3박 4일의 국외출장을 수행하며 본 추계에서는 1인당 400만원의 여비를 적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2.5%	3.2%	3.6%	3.9%	3.8%	3.8%	3.8%

3) 방위사업청(2022년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입비는 3,000유로이고 환율(1유로=1,538.88원, 2024.12.27.일 기준) 적용하여 추정

4) 방위사업청(2022년 제출자료)에 따르면, 연회비 3,500유로, 수상함 기준(Naval Ship code)사용료 3,000유로, 잠수함 기준(Naval Submarine code)사용료 5,750유로이고 환율(1유로=1,538.88원, 2024.12.27.일 기준) 적용

- (표준감항인증기준 제·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 2026년 3억 1,600만원, 2030년 9,500만원으로 추정
 - 방위사업청은 인증기준 제·개정을 위하여 NATO 수상함 및 잠수함 기준 번역 및 국내 영향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
 - 2026년에는 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개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표준감항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은 2022년 기준 2억 8,600만원이고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용은 7,9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추계결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5,200만원, 2029년 1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제함정안전협회	가입비	5	-	-	-	-
	연회비	19	19	19	19	19
연례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12	12	12	12	12
정책연구용역	제정	316	-	-	-	-
	개정	-	89	91	93	95
합계		352	120	122	124	1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감항인증 업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총 7명의 직원 채용에 다른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산출하고 사무실은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의 취지와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인원 총 7명으로 가정
 - 함정 감항인증 업무의 유사 사업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1인당 보수는 2021년 기준 7,100만원이었고 본 추계에서는 2022~2024년은 연도별 공무원 보수 상승률⁵⁾, 2025년 이후는 최근 3년

5)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2~2024년) 평균 공무원 보수 상승률 1.9% 적용

- 기관부담금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⁶⁾를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유사조 직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부서의 2022년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55.6%) 적용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고 1인당 501만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추계결과, 감항인증 업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억 5,700만원, 2030년 9억 9,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감항인증 업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 ($c=a \times b$, 백만원)	인원 (a,명)	7	-	-	-	-
	1인당 보수 (b, 만원)	7,793	7,941	8,092	8,245	8,402
		546	556	566	577	588
기관부담금 ($=c \times \text{요율}$, 백만원)		72	73	75	77	79
기본경비 ($=c \times 9.6\%$, 백만원)		304	309	315	321	327
자산취득비(백만원)		35	-	-	-	-
합계(백만원)		957	938	956	975	9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수수료 수입(안 제9조)

□ 본 추계에서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⁷⁾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수료 규정을 참고하여, 함정 판매 가격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과 감항인증 활동 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

6)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은 2026년 13.1%, 2027년 13.1%, 2028년 13.2%, 2029년 13.3%, 2030년 13.4%

7)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수료)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 발급(제5조제2항에 따른 추가발급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1. 개별 군용항공기별 판매가격에 1만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감항인증 활동에 직접 필요한 여비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본 추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년 호위함(약 3,000억원) 1척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고, 함정 감항인증 부서의 직원 15명이 5회(1회당 출장비 단가 20만원) 감항인증을 위한 출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수수료 수입은 2026년부터 매년 4,500만원으로 추정

[표 4] 수수료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수료	판매가액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요율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수수료	30	30	30	30	30
여비	출장인원	15	15	15	15	15
	출장비 단가	0.2	0.2	0.2	0.2	0.2
	출장횟수	5	5	5	5	5
	여비	15	15	15	15	15
합계		45	45	45	45	45

자료: 방위사업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13명 중 민간위원이 4명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함정 감항인증위원회의 민간위원도 4명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5만원⁸⁾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매년 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3	3	3	3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8)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마.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안 제11조)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이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항인증에 관한 자문위원 5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자문료는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당 단가와 같은 1회당 25만원⁹⁾씩 지급하고 연 6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매년 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	8	8	8	8	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의 취지 및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함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을 지정한다고 보고, 국방기술품질원에 함정 감항인증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
- 총 44명의 직원 채용에 따른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산출하고 사무실은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의 취지와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함정 감항인증 전담부서의 인원은 총 44명으로 가정

[그림 1] 함정 감항인증 부서 조직도(안)

전투함인증과(15명)	지원함인증과(15명)	잠수함인증과(14명)
· 전투함(구축함, 호위함 등) 감항인증 수행 · 감항인증 관련 조사·분석	· 지원함(군수지원함, 구조함 등) 및 수출함정 감항인증 수행 · 감항인증 정책/제도 수립 지원 · 부품국산화 감항영향성 검토	· 잠수함 감항인증 수행 · 잠수함 관련 감항인증 기준 및 기술 조사·분석

자료: 방위사업청

9)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유사 조직인 국방기술품질원 감항인증연구센터의 1인당 보수는 2021년 기준 8,675만원이었고 본 추계에서는 2022~2024년은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¹⁰⁾, 2025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기관부담금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¹⁾를 적용하고 기본경비는 유사 조직인 국방기술품질원 감항인증연구센터의 2022년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9.6%) 적용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고 1인당 501만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추계결과,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8억 1,400만원, 2030년 65억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감항인증 업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 ($c=a \times b$, 백만원)	인원 (a,명)	44	-	-	-	-
	1인당 보수 (b, 만원)	10,362	10,755	11,164	11,588	12,029
		4,559	4,732	4,912	5,099	5,293
기관부담금 ($=c \times \text{요율}$, 백만원)		597	620	648	678	709
기본경비 ($=c \times 9.6\%$, 백만원)		438	454	472	490	508
자산취득비(백만원)		220	-	-	-	-
합계(백만원)		5,814	5,806	6,032	6,267	6,5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감항인증 업무 수행,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0억 8,900만원, 2030년 75억 9,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59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10)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11)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은 2026년 13.1%, 2027년 13.1%, 2028년 13.2%, 2029년 13.3%, 2030년 13.4%

13.066% 13.35%(2025), 13.46%(2026), 13.46%(2027), 13.46%(2028)임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 소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352	120	122	124	126	844
	감항인증 업무	957	938	956	975	994	4,820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설치	3	3	3	3	3	15
	감항인증 자문위원 위촉	8	8	8	8	8	40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5,814	5,806	6,032	6,267	6,510	30,429
	소 계(A)	7,134	6,875	7,121	7,377	7,641	36,148
재정 수입	수수료 수입(B)	45	45	45	45	45	225
추가재정소요(C=A-B)		7,089	6,830	7,076	7,332	7,596	35,9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방위사업청이 감항인증업무 등과 관련하여 2022년에 제출한 자료의 증원 인원, 1인당 보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